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10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살인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마약 등 사용·투약행위 가중 처벌 근거 신설	2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1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살인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마약 등 사용·투약행위 가중 처벌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살인·상해·강간·추행·강도·절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마약류·임시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제2항제2호·제60조제2항제2호·제61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벌칙) ① (생략)	제5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u>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신설>	1.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u>
<신설>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1항제3호의 죄(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13호의 죄(1군 임시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u>

③·④ (생략)
제60조(벌칙) ①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신설>
<신설>

③ (생략)

가.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제2항의 죄
나.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
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2항
의 죄
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
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
의 죄 중 제329조 및 제333조의
죄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
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
게 제1항제1호의 죄(마약 또는 제2
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죄(제2조제3
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
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
정한다)를 범한 자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생 략) ②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③ (생 략)	제6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u> 2. <u>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1항제1호의 죄[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5호의 죄(제2조제3호라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의 죄(대마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죄(2군 임시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고,

술이나 음료에 마약류를 몰래 투입하여 이를 마시고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상대방에게 강간·사기 등의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¹⁾.

□ 현행법은 자기투약과 타인투약을 구별하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류 투약이 어떠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지와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²⁾에도 범죄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사용·투약 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살인·상해·강간·추행·강도·절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³⁾·임시마약류⁴⁾를 사용·투약·제공하는

1) [참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 사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권유·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소유·채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채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현행과 개정안의 처벌 수준 비교>

조 문	처벌 요건	처벌 수준	
		현행	개정안
안 제59조제2 항제2호	- (제59조제1항제3호) 살인·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절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사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 (제59조제1항제13호) 살인·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절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1군 임시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안 제60조제2 항제2호	- (제60조제1항제1호) 살인·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절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제60조제1항제2호) 살인·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절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안 제61조제2 항제2호	- (제61조제1항제1호) 살인·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절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한 경우 - (제61조제1항제5호) 살인·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절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 (제61조제1항제6호) 살인·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절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사용한 경우 - (제61조제1항제8호) 살인·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절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2군 임시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이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목적범죄의 범위와 표현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 상해, 강간·강제추행, 절도 및 강도를 열거하고 있음. 이와 같이 기본 구성요건만을 특정하면 형법상 특수상해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히 약물 이용 성범죄의 경우 약물의 투여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약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제299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제299조를 목적범죄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의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이라는 표현은 절도죄와 같이 재물의 소유자·점유자와 마약류가 사용·투약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목적범죄와 마약류 사용·투약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음.

□ 둘째, 마약류의 종류와 현행 벌칙조항의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누락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살인 등의 목적으로 코카인 등 마약을 수수한 경우(제59조제1항제9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수수한 경우(제58조제1항제3호), 1군 임시마약류를 제공한 경우(제58조제1항제8호) 및 대마를 수수한 경우(제61조제1항제6호)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부터 라목 및 임시마약류의 경우에는 ‘제공’을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는 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및 대마를 건네는 행위는 ‘수수’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이 일부 조문의 ‘사용·투약·제공’만을 인용함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마약류를 범죄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이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태양별로 벌칙조항을 달리 규정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마약류를 사용·투약·제공 또는 수수한 행위를 포괄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마약류 사용·투약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는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가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수사실무상 상대방의 동의 아래 마약류를 주입하는 행위는 ‘투약’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몰래 복용하게 하는 등 투약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류를 복용하게 하는 행위는 ‘사용’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행위인지, 피해자가 마약류 복용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범죄를 실행하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넷째,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하여는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법정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사용·투약·제공한 경우 일반적인 마약류 사용·투약·제공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안 제59조제2항제2호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안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는 해당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형법」상 상해치사죄, 유기·체포·감금 등의 치사죄, 인질강요죄, 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등과 동일한 징역형 하한임⁵⁾. 개정안은 목적범죄가 실제로 실행되거나 그 실행에

5)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착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마약류를 사용·투약·제공한 행위가 완료되면 살인·강간·강도 등의 목적범죄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신설 가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정형이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에 비례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살인목적과 절도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 마약류의 종류와 해당 벌칙조항에 따라 동일하게 가중하고 있음. 또한 제59조는 징역형의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반면, 제60조와 제61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높이면서 벌금형의 선택 가능성은 유지하므로, 동일한 범죄 목적 사용행위에 대한 가중방식과 실질적인 가중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다섯째, 상습범 및 미수범 규정과의 적용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현행 상습범 가중규정을 각 조 제2항제1호로 옮기고 목적범을 제2호로 신설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제2호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를 추가로 가중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마약류 사용·투약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가중하면서 범죄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반복 사용한 경우에는 상습가중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은 각 조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어, 목적범을 제2항에 신설하면 마약류 사용·투약·제공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됨. 특히 현행 제59조제3항은 제1항제13호의 1군 임시마약류 범죄를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제2항제2호에 포함하면 범죄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미수도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입법의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미수범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⁶⁾」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08)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투약행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법무부)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가중처벌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 검토 필요. 개정안은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특정함에 따라 같은 「형법」 내 ‘특수상해죄’나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가 제외되는 미비점이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의 추가 등 보완 검토 필요

□ 개정안은 법정형이 그 범죄의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데 즉, 살인목적과 절도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목적 범죄에 비례하여 차별화할 필요 등 보완 검토 필요

□ 상습처벌규정 미흡 부분 보완 검토 필요

□ 개정안은 제59조~제61조에 있어서 현행법 각 제2항에 있는 상습처벌규정을 각 제2항제1호로 규정하는 반면,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각 제2호로 신설하여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구조로 신설되어 있음

□ 그러나, 신설되는 제2호의 죄를 상습으로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이 제외되는 미비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

□ 개정안은 살인 등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대마 및 1군 임시마약류를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장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가 치료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처방·투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후적으로 해당 약물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도 존재함. 이러한 경우 ‘범죄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처방 당시에는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이후 환자의 행위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방 시점의 판단과 사후 행위를 기준으로 범죄 목적을 판단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불순한 목적의 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의료진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보호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아울러, 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처벌 규정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약물 종류와 관계없이 범죄 수단으로서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물 종류별 차등보다는 ‘범죄 목적의 사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약사회) 약국 현장에서는 마약류 다중·다량 복용자들이 본인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강압적인 처방을 유도하며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함.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가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엄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장 의료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4

【참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 사례
-------------	-------------------------------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0쪽	2013. 6.~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강간 (서울서부지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1쪽	2015. 4.경 피의자들(58세, 택시운전사 / 44세, 무직)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삼페인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투약 (서울동부지검) 2015. 5.경 피의자(4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추돌 (인천지검) 2015. 5.경 피의자(41세, 무직)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디아제팜을 복용시켜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후 간음하여 상해 (부천지청) 2015. 6.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무직)가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 도주하다 전신주 2개를 충격하여 공공기물 파손 (부산동부지청)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22세)이 향정신성 의약품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 (서울 중앙지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4쪽	2019. 1.경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치던 피의자들(54세, 도박 벌금 2회 / 60세, 도박 벌금 2회)이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이에 사리판별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부산서부지청) 2019. 6.경 피의자들(46세, 스크린골프장 운영 / 46세, 자영업, 도박 등 전력 5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음료수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1억여 원 편취 (인천지검)
2021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61쪽	2019. 6.경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피의자(2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2 시간 동안 감금하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면서 동영상 촬영 (서울중앙지검)
2021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64쪽	2008. 3.경 경기 양주시 OO면 유원지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8세, 무직)가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이 섞인 생수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 (의정부지검)